

■ 대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국어교사모임(이하 '모임'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설의 대관에 대한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신청)

대관 예정 전일까지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 신청을 먼저 한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4조(대관신청의 제한 및 취소)

1. 모임의 행사가 예상되는 날의 시간에 대해서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2. 모임은 대관 승인 후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관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대관 승인)

1. 모임은 신청인의 대관 신청 접수 후 이를 심사하여 대관 승인의 가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모임은 대관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대관료)

1. 대관자는 사용일 전에 대관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2. 대관료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1일 (09:00~22:00)	오전 (09:00~12:00)	오후 (12:00~18:00)	야간 (18:00~22:00)
평일	100,000	10,000/1시간	10,000/1시간	15,000/1시간
휴일	120,000	10,000/1시간	15,000/1시간	20,000/1시간

※ 단위 : 원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 ① 모임의 하위 체계에 속한 모임이 주최하는 행사
- ② 정회원이 학생을 인솔하는 행사
- ③ 사무처 운영위에서 승인한 행사

제7조(대관의 취소 및 변경)

1.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임에 대관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2. 모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

- ① 사용일 3일 이전 대관 취소: 전액 환불
- ② 사용일 2일~1일 이내 대관 취소: 90% 환불

③ 사용일 대관 취소: 환불 불가

④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모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환불

제8조(대관자의 의무)

1. 대관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현수막, 포스터, 안내문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경우 사전에 모임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모임은 사전 통보 없이 이를 제거할 수 있다.
3. 대관자는 행사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을 종료 후 정리하여야 한다.
4.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모임 시설 사용 제한 및 차기 대관 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이나 손실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이 규정은 2019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